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성낙철 의원 외 5명 )



고령군의회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성낙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인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 조례」안 제정 목적을, 제3조에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도·감독 의무를,

제5조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에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 단순명확화,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규정 및 제4조의3 신고체계 마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 (성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 .

발의자 : 성낙철·이철호·유희순·

김명국·성원환·김기창

### 1.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안 제4조)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시행규칙 (안 제5조, 제6조)

### 3. 제정안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령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

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0. .

발 의 자 : 성낙철·이철호·유희순·

김명국·성원환·김기창

##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법」 개정 (2021.07.20.)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안 제3조)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신설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안 제4조)
- 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를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을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으로,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의 제목“(설치기준)”을“(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 있다”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도색할 것”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각각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5조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비치·제공할 것.”로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규칙</u>----- ----- ----- <u>규정</u>----- <u>함</u>----- ----- -----</p>
<p>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략)</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 ----- ----- ----- <u>시설이라 함은</u>-----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 -----</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p>	<p>제4조(군수의 책무) <u>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u>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p>

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  
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  
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  
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  
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  
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  
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  
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  
-----  
----- 할 것.
2. -----  
-----  
-----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  
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  
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  
·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

3. -----  
-----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삭 제>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  
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  
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  
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  
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  
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  
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공중 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  
-----  
-----.

1. -----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설치할 것.

2. -----  
----- 설치할 것.

3. -----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  
-----.

1. -----  
----- 지정할 것.

2. -----  
-----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  
-- 비치·제공할 것.

③ (현행과 같음)



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전 경 사 진</p>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m <sup>2</sup> )	화장실 면적 (m <sup>2</sup>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단위 : 만원)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